

[참조]

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
법령·제도 개선 권고 주요 내용

2007. 11. 12.

1. 사업장 단위에서 전자감시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
법률 마련

- 사업장에서 전자감시의 명확한 허용범위 규정
 - 전자감시가 허용될 수 없는 장소 규정
 - 사업장내 개인적 공간이나 복지공간
 -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·감독을 벗어난 공간
 - 전자감시로 수집될 수 없는 정보의 내용
 - 근로자의 사상, 건강, 질병
 - 사업장내·외의 집단 활동
 -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항
 - 전자감시가 허용될 수 없는 목적 또는 이용범위
 - 근로자의 평가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
 - 전자감시의 사용형태와 요건 제한
 - 지속적이거나 일방적 또는 은밀한 감시에 대한 객관적인 필요성 입증
 - 범죄 또는 근로자의 심각한 안전사고 예방은 제한된 요건에서만 실시
- 전자감시로 수집된 근로자 정보의 보호
 - 근로자 정보 수집 목적의 명확화, 구체화
 -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
 - 근로자의 자기정보 접근 열람 가능
 -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대한 정정, 삭제 요구권 인정

- 수집된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
- 수집된 근로자 정보의 분실, 파손, 불법적 접근, 수정, 사용, 유포 등에 대한 보안조치 마련
- 전자감시를 통한 근로자 정보의 무제한 축적, 근로자 정보의 남용 금지
- 사용자의 전자감시 오·남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방안 규정 마련
- 불법적인 전자감시의 사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
- 전자감시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
- 독립된 보호기구에 의한 시정명령

2. 법률에 근로자의 본질적 권리에 대한 보장과 사용자의 전자감시 활용 등에 대한 절차적 통제 제도화

- 근로기준법 총칙에 근로자의 인격과 사생활의 자유 보호 관련 명시적 규정 추가
-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기재사항에 전자장치에 의한 작업관찰·감시기술 도입할 경우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

3.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 및 사업장 별 또는 산업별 규제를 위한 정책적 조치

- 사용자의 전자감시에 의한 근로자의 중대한 권리침해나 근로자 집단에 대한 부당한 개입, 차별 등에 대한 사업장 수준의 근로감독 강화
- 전자감시에 대한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세부 준칙 또는 지침 마련